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군인의 특별진급 대상 확대 〉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77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26.
3. 회부연월일 : 2024. 1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작전이나 훈련 등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우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특별진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전·평시를 불문하고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을 대상으로 특별진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30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30조(특별진급) ① ----- ----- ----- -----. ----- -----심의-----.
②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령 이상으로 진급시킬 때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	②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 -----다음 <u>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u> ----- -----. ----- ----- -----.
<신 설>	1. 장교의 경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심의

<u><신 설></u> ③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기 전에 전역하거나 퇴역(退役)하는 경우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u><신 설></u>	2. 부사관의 경우: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③ ----<u>각 호 외의 부분 단서</u>----- ----- -----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현행법상 군인은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이하 “특별진급¹⁾”이라 함)할 수 있음.

하지만 법 제30조제2항에 의해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하 “전투유공자”라 함)에서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어 진급된 경우는 해군에서 2건(6명)이 전부임.

1. 제1연평해전 관련 진급(1999년 7월)

- 장교 1명(진급 최저복무기간 경과)
- 부사관 4명(진급 최저복무기간 경과 3, 미경과 1)

2. 북한 장거리 미사일 추적 유공(2012년 4월)

- 부사관 1명(진급 최저복무기간 경과 1)

1) 통상 진급은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근무하고,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장교·부사관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될 것을 요건으로 하나, 현행 「군인사법」 제30조는 전시·순직자 또는 전투,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급시킬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전투유공자로 진급된 경우가 적은 이유는 「군인사법 시행령」²⁾ (대통령령)에서 “뚜렷한 공적”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화 시키고 있음에도 그 적용 사례가 많지 않거나 실제 적용에 있어 판단기준이 다소 추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에 개정안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군인을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군인의 사기진작과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한편, 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특별진급 대상자인 전사자 및 순직자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제54조의2³⁾에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2) 「군인사법 시행령」 제43조(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② 제1항에 규정된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3)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3(보통전공상사심사위원회) 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의 특별진급 판단 기준 역시 현행 대통령령처럼 추상적이지 않고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참고로, 군인과 유사한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경찰공무원법」에 특별승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별승진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경찰공무원법」

제19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 ③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할 경력이 있는 군인
 6. 그 밖에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4명은 직전 회의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⑦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그 밖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1., 2. (생략)

3.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② 특별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에는 첩보 제공 등 공조수사를 하여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1. 헌신적인 노력으로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살하거나 검거한 사람

2. 국가안전을 해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사람

3.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사태 진압에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

4.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 검거에 헌신·분투하여 그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발생 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경비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이 있고,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또한, 개정안 제1항, 제2항에서는 “심사”라는 용어를 “심의”로 변경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3항에서는 여전히 “심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법 제25조에서는 “선발위원회의 심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므로 법체계적 통일성을 고려할 때 “심의”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4).

4) 「군인사법」 제25조(진급권자) ① 장교의 진급은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 국방부는 전시가 아닌 평시 작전·교육·훈련 중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점, 군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측면, 경찰·소방공무원 등도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특별승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

-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 ③ 대장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대령 이하의 장교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전사자와 순직자의 진급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부사관의 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성급 지휘관이 행한다.